###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7 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김예지・엄태영・구자근

김승수 · 서범수 · 이종성

추경호 · 최형두 · 이종배

이주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.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 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 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, 감염병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

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(안 제17조제4항). 법률 제 호

####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 •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
- 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
-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 ~	제17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	4
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・수	
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공유	
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	
에도 불구하고 <u>대통령령으로</u>	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
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	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
정할 수 있다.	면제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해
	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의 납부
	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	<u>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1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(민간
	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
	<u>수리·보수된 시설을 포함한</u>
	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
	같다)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
<신 설>	경기장으로 사용・수익하는
	<u>것을 허가하는 경우</u>
	2.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
	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
	<u>여 사용·수익하는 것을 허가</u>

<신 설>	<u>하는 경우</u> 3.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
	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
	<u>는 경우</u>
<u> &lt;신 설&gt;</u>	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	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
	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
	<u>없는 경우</u>
<u>&lt;신 설&gt;</u>	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
	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
	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	<u> 수</u>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